

2022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

사단법인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2022년 정기총회를 코로나 확산으로 다음과 같이 비대면 줌 영상 총회로 개최하오니, 회원께서는 많은 참여(서면심의, 줌 영상회의 참석) 바랍니다.

1. 일 시 : 2022. 3. 22.(화) 오전 10시
2. 장 소 : 한드미농촌유학센터
3. 진 행 : 비대면 줌 영상회의
* 정기총회 단독방 개설 후 링크 조치
4. 참석 대상 : (사)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개인 및 단체회원
5. 의결 사항

- 가. 2022년도 임원 선출의 건
- 나. 2021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(서면심의)
- 다. 2021년도 감사 보고서
- 라. 2022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(서면심의)

※ 서면 심의 자료는 회원 이메일로 총회 개최 6일 전 까지 개별 송부하고, 회원은 서면 심의자료를 확인 후 심의서에 서명한 후, 정기총회 개최 시까지 협의회 이메일 주소로 제출.

6. 의결 사항 제출(서면 심의서)

⇒ '22.3.22(화) 10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: e-mail : koreafarmschool@hanmail.net

7. 총회 시 회원의 의결권 제한 및 회원자격 제한 안내

(사)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회원 회비관련 내규 제5조(회원의 회비규정) 제4호: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 할 시에는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며, 1년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을 시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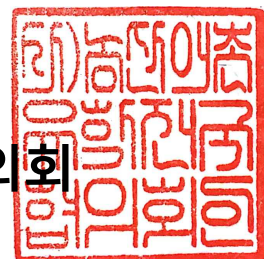
※ 총회 의결권 및 회원자격 회복을 위하여 총회 개최 1일 전까지 지정 계좌에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총회 및 회원 문의 사항은 협의회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hp010-500*-5*** 양○호>

붙임 : (사)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회원 명부

2022. 3. 11.

사단법인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



(사)농산어촌유학 전국협의회 회원 명부(단체 및 개인)

단 체 회 원			개 인 회 원		
순	단 체 명	총회 의결권 여부 ¹⁾	순	성명	총회 의결권 여부
계	21센터	19	계	22	18
1	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(양○○)	○	1	김○구	○
2	부론자연학교사회적협동조합(문○○)	○	2	김○아	○
3	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(김○○)	○	3	김○환	○
4	가평민들레교육협동조합(전○○)	○	4	김○양	○
5	(주)청량산풍경원농업회사법인(김○○)	○	5	석○미	○
6	(사)곡성평화공동체(최○○)	○	6	정○찬	○
7	사회적협동조합소호산촌교육숲(김○○)	○	7	주○우	○
8	산위의마을영농조합법인(박○○)	○	8	정○호	○
9	(사)열린마을청소년문화연구회(임○○)	○	9	최○영	○
10	(주)지리산숲놀이농촌유학센터(주○○)	○	10	박○현	○
11	명덕재산골교육사회적협동조합(정○○)	○	11	방○애	○
12	한드미영농조합법인(정○○)	○	12	양○성	○
13	<u>어울더울협동조합(조○○)</u>	○	13	이○자	○
14	<u>양지그린락협동조합(유○○)</u>	○	14	양○효	○
15	<u>빛마을산촌유학센터(이○○)</u>	○	15	유○우	○
16	희망나무숲산촌유학센터(문○○)	○	16	이○숙	○
17	바른몸밝은마음배움터(백○○)	○	17	공○표	○
18	사재산영농조합법인(김○○)	○	18	이○숙	○
19	옴넛골산촌유학협동조합(최○○)	○	19	양○호	<u>부</u>
20	춘천별빛사회적협동조합(이○○)	<u>부</u>	20	강○연	<u>부</u>
21	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하늘꽃마을산촌유학(홍○○)	<u>부</u>	21	류○성	<u>부</u>
			22	최○철	<u>부</u>

▣ **고지사항 : 총회 시 회원의 의결권 제한 및 회원자격 제한 고지**

(사)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회비관련 내규 제5조(회원의 회비규정) 제4호: **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 할 시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**하며, 1년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을 시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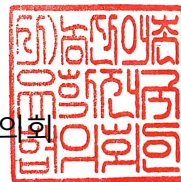
▣ **총회 의결권 및 회원자격 회복 안내 : 총회 개최 1일 전, 또는 임원등록 일(임원등록 신청자에 한함)까지 미납 회비를 지정 계좌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**

[회비 납부 지정계좌 : 농협 301-0086-1328-81 (사)농촌유학전국협의회]

위 회원 명부는 본 회에 비치된 회원 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

2022. 3. 11.

사단법인 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



1) 총회에서 의결권 제한 : (사)농산어촌유학전국협의회 회비관련 내규 제5조(회원의 회비규정) 제4호: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 할 시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며, 1년 이상 미납 시에는 회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시정되지 않을 시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.